



창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시행 2020.9.1] [창신대학교학교규정 제2020-157호, 2020.9.1, 전부개정]

창신대학교 교무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창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창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초빙교원·연구원·대학(원)생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한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7.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8.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1.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기능) 창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창신대학교 교원의 보직임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확립 및 검증

제11조(연구윤리 확립 등) ①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2.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활동
3. 연구윤리 교육
4. 논문작성법 교육

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연구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실시 및 관련 업무는 대학의 관계 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아니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발표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발표한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안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5. 그 밖에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② 조사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해당 조사 사건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조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판정 후 30일 안에 착수되어야 하며,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판정) 위원장은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안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등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①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안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장은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 및 위원장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회의 및 조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